

청도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공고 제2021-1호

「2021년 청도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」 청도 반려문화학교 운영 시범사업자 모집 공고

「2021 청도 반려문화학교」를 운영할 시범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하오니, 희망하는 사업자는 아래의 모집요건을 숙지하여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1년 11월 30일

청도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장



1. 공고개요

- 공 고 명 : 2021 청도 반려문화학교 운영 시범사업자 모집
- 사업목적 및 내용
 - 청도군 및 근교도시의 반려견 인구 대상 반려견 관련 갈등 완화를 위한 사회화 훈련, 문제행동 교정, 예절 교육 등 반려견 전문 훈련 교육과정과 군내 관광명소 운영진 및 관광서비스업 운영진 대상 반려견 동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컨설팅 및 실습 교육으로 구분하여 진행
- 공모기간 : 2021년 11월 30일 ~ 12월 02일
- 사업기간 : 2021년 12월 06일 ~ 12월 24일
- 사업장소 : 청도군 일대
- 사업규모 : 10,000 천원(부가가치세 포함) 이내, 1개소 선정
- 신청자격 : 사업수행 가능한 관내 사업자 또는 기관단체
- 주 관 : 청도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

2. 신청방법

- 접수기간 : 2021년 12월 01일 ~ 12월 02일
 - ※ 토·일·공휴일 제외, 평일 근무시간내 09:00~18:00
- 신청방법 : 방문접수
- 접수처 : 경북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49 운경회관 1층
(청도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)
- 제출서류
 - 사업 신청서 1부.
 - 사업 계획서 1부.
 -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1부.
 - 청렴서약서 1부.
 - 참여인원 서명부 1부.
 -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1부.
 - 사업 참여 전문 인력 이력서(자유서식) 1부.(※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)
- 신청문의 : 청도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(054-373-7815)

3. 대상자 선정절차

- 제출서류 심사, 운영 추진 계획 및 교육 커리큘럼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 여부 확인
- 신청자가 1인일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적격심사로 사업자 선정
다만, 2인 이상일 경우 심사 절차 추진
- 심사개요
 - 심사일정 : 2021년 12월 03일 10:00 예정
 - 결과발표 : 2021년 12월 03일 15:00 예정
 - 심사위원 : 3명

○ 심사기준

- 평가점수 최고 득점자 선발

구분	심사영역	심사기준	배점	
1	사업의 필요성	목적성: 신활력플러스 사업 목적에 대한 이해도	10점	20점
		적정성: 지원 사업 취지에 맞는 기획의 적정성	10점	
2	운영의 적절성	사업 실현가능한 구체성	15점	55점
		예산 규모 및 편성의 합리성	20점	
		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역할분담의 적절성	20점	
3	사업 효과성	지역 내 파급효과(성과)의 명확성	15점	25점
		사업 종료 후 본 사업과 연계 지속가능성	10점	
합계				100점

3. 기타 유의사항

- 사업계획서 등 공모를 위하여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.
-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실의 허위 기재 등이 밝혀지면 선정 이후에도 취소할 수 있음.
- 사업자로 선정된 자(이하 '사용자'라 한다)는 청도 반려문화학교 대상자 및 교육 운영 관리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.
- 응모자는 공고내용을 숙지하여 공모에 참가하여야 하며, 관계 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- 본 응모에 대하여 별도의 현장 설명회가 없으니 응모자는 본 사업에 대하여 사전숙지를 하시고(사업이 타당성 등), 기타 응모에 관한 사항은 응모기간 내에 담당자에게 확인하셔야 하며,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.
-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, 사업 선정이 취소 됩니다.

- 제3자에게 양도·양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
-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
- 사용자는 사용 목적을 도군 및 청도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의 승인없이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.
-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준용하고, 해석상에 이의가 있는 때는 청도군 및 청도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의 해석에 의합니다.

4. 공고 및 사업에 관한 문의사항

- 청도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(054-373-7815)